

2025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차 시험

- 재직경찰관 전형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대 학

경찰대학사이트 : <http://www.police.ac.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www.jinhakapply.com>

【형 사 법】

총 13쪽 4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이 구성요건의 세부사항을 명령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으로 사후입법으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제정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구성요건에 새로운 행위를 추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④ 유추해석금지원칙은 범죄와 그 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적용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 범죄구성요건, 소추조건, 인적처벌조각사유와 객관적 처벌조건, 형면제사유,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⑤ 적정성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형벌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형식적 의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국가의 이상형에 일치하는 적정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원칙이다.

2.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양벌규정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한다.
- ㄴ.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라면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 ㄷ.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 ㄹ.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 ㅁ.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ㄷ, ㄹ,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3.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거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② 의사인 甲이 수술실에서 환자인 A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간호사 B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는데, 이후 A가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혈압이 반복됨에 따라 B가 甲을 수회 호출하자, 수술실에 복귀하여 A가 심정지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투여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사망하였다면, 甲에게 업무상과실과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③ 판사로 재직하던 甲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이나 담당판사의 행위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는 甲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하였고, 甲의 말을 권유 정도로 이해하였다면, 甲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비롯한 구체적인 상태,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행위자의 언행을 판단하여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정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10. 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 ㄷ. 제1심이 실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ㄹ.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지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밖에 없다.
- ㅁ.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ㄷ, ㄹ, ㅁ

11.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범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 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⑤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범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도 마찬가지이므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 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12. 형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 ②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누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선고유예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13.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성립하므로 혼인 외의 자가 생모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 ②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에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③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준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외적행위를 요한다.
- ④ 강도인 甲이 배개로 피해자 乙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乙이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乙이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의사 甲이 연명치료를 요하는 환자 乙의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 환자 乙이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14.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에게 A를 상해하라고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넘어 A를 살인한 경우, 甲에게 A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②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 ③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④ 甲은 乙이 만나주지 않아, 乙의 가게로 찾아가 주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어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경우, 甲의 행위는 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직장동료 사이인 甲과 乙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甲의 샷대질을 피하기 위해, 乙이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하였다면, 甲에게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15.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신의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피해자 乙이 실신하자, 乙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라도, 甲에게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의무는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상의 보호의무도 인정된다.
- ③ 유기죄의 경우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 ④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 ⑤ 甲이 미성년자인 아들 乙을 양육하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乙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甲이 乙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을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16. 자유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A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A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각 경찰관 개인에 대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형법」 제289조의 인신매매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처벌한다.
- ③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④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17.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든지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②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 ③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 ⑤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고,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

18.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甲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보관하고 있는 피해회사 소유의 문서로서, 甲이 이를 가지고 간 행위는 회사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뿐만 아니라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ㄷ. 甲이 술집 운영자 乙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乙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ㄹ.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ㅁ. 강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9.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있는 경우,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기에는 부족하므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있어야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 ㄴ.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 이 필요하나, 그 증명의 정도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족하다.
- ㄷ.甲이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 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 ㄹ.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면,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 ㅁ. 쿼서비스 운영자 甲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A가 운영하는 쿼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A가 운영하는 쿼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에도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neg, \Box$
④ $\sqsubset, \Box$
⑤ $\sqsubset, \Box$

20.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이후, 그 담보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배임행위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민법」 제806조(인지의 소급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1.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甲이 화가 乙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乙이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한 후, 乙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경미한 작업을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인 것처럼 전시하여 A로부터 그림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ㄴ.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ㄷ. 甲이 乙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乙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乙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이후 편취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이 이를 인출하였다면, 이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
- ㄹ. 공갈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그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며,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행위시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ㅁ. 甲이 수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 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X) ㄴ(X) ㄷ(X) ㄹ(O) ㅁ(O)
 ② ㄱ(O) ㄴ(X) ㄷ(O) ㄹ(O) ㅁ(O)
 ③ ㄱ(X) ㄴ(X) ㄷ(O) ㄹ(O) ㅁ(O)
 ④ ㄱ(O) ㄴ(X) ㄷ(X) ㄹ(O) ㅁ(X)
 ⑤ ㄱ(X) ㄴ(X) ㄷ(O) ㄹ(O) ㅁ(X)

22. 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乙의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乙의 차량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乙이 약 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②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③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한 것으로서,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④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도,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甲이 乙로부터 전세금 2,000,000원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뒤에, 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乙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이를 찢어버린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29.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는 범죄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 ③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피압수자에게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⑤ 국내에 있는 원격지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원격지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으나, 정보저장매체가 역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

30.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강연과 토론·발표 등은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 해당된다.
- ②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④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위증죄의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번복 진술을 받아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⑤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31.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거가치가 있더라도 공판정에서 증거조사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증거동의를 하였다면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탄핵증거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 ㉤. 甲이 상습절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재판부에서 검찰청에 전화로 전과조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습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① $\neg, \perp$
② $\perp, \top$
③ $\top, \bot$
④ $\bot, \top$
⑤ $\perp, \top$

3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적법절차의 실질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닌 영역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
- ② 위법한 1차적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 되었다면 비진술증거와 진술증거 구분 없이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과정에서 적용되므로, 재판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증인의 증언이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증거능력의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위법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3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와 2024. 11. 01. 자기 집에서 함께 잠을 자는 중에 A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촬영하였다. A는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甲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A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甲에게는 참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2016. 10. 20. 촬영된 마약매매 동영상을 발견하고 A에 대한 성범죄 동영상과 함께 압수하였다.

- ①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고,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당시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므로 A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였다면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P가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마약매매 동영상을 발견하고, 추가 탐색을 중단한 다음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 마약매매 동영상을 압수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마약매매 동영상에 대해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마약매매 동영상뿐만 아니라 A에 대한 성범죄 동영상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甲이 P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34.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A에게 “주말까지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딸을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해당 문자메시지가 사진촬영되어 증거로 제출된 경우 문자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 甲과 A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甲은 A에게 “내가(甲) B를 죽였다”라는 말을 하였고, A가 해당 내용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피고인 甲이 공판기일에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乙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재현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부동의 하더라도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해 진술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다면 조사에 참여했던 자들의 증언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

3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는 직장 상사인 甲이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주는 장면을 목격한 후, 직장 동료 B에게 목격담을 이야기 하였다. B는 A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C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메일에는 “A가 내 사무실로 찾아와서 나에게 ‘내가(A)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준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다. 甲과 乙은 뇌물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B가 작성한 이메일이 문서로 출력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

- ① 이메일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료의 동일성과 무결성, 신뢰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B가 작성한 이메일은 A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기재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A와 B가 공판기일에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이메일의 내용은 A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작성한 것이므로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⑤ 이메일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 및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36.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반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② 단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할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간주된다.
- 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를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를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3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주차량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례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적 성격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그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이라는 입장이다.
- ② 특가법상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죄의 경우와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콜농도의 법정최저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 ③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④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
- ⑤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2세 남짓한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후 울고 있는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가다가 약국에서 소독약을 사서 치료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길가에 하차시키고 떠난 경우 이러한 소위는 특가법 제5조의 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3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처법은 형법상 상해·존속상해, 폭행·존속폭행 등 8개 불법유형만을 선별해 대상범죄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범죄에 폭행치상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폭처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공동’의 의미는 수인간의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 ④ 여러 사람이 폭처법의 대상범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폭처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⑤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의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하부 조직원들이 행사장에 도열하여 상부 조직원들이 도착할 때와 나갈 때 90°로 인사하는 이른바 병풍 역할을 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행위는 폭처법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3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의 대상범죄인 특정재산범죄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및 그 상습범,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배임 및 그 미수범으로 제한된다.
- ②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경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③ 특경법 제3조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양형요소가 아니라 특경법 제3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④ 형법상 친족특례규정은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경법 제3조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⑤ 특경법 제7조(알선수재)의 ‘알선’이라 함은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알선의뢰인이 먼저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자가 미리 물색, 협상한 거래를 제안받고 그 대가의 지급을 수락하는 방식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다.

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폭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범한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만일 그 선후가 뒤바뀌어 먼저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후 주거침입죄등을 범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각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② 성폭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뻥뻥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점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 ③ 성폭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비친고죄로서 미수범과 예비·음모한 사람도 처벌하며 자유형의 하한이 7년으로 살인죄보다 높고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 ④ 성폭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장애인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각 성폭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및 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
- ⑤ 피고인 4명이 사전에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 합의에 따라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트럭과 벤치로 홀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각자 선택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각각의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